

공정위, 건설자재 및 엔지니어링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

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단체¹⁾ 및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건설자재, 엔지니어링 등 2개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새로 제정하여 보급하였다. 이로써 공정위는 지난 10월부터 추진해온 11개 분야²⁾의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 확대작업을 완료하였다.

공정거래위원회는 동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급으로 인해 경제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하도급계약의 체결과정에서 받게 되는 불이익과 분쟁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, 동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대등

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상호 신뢰관계 구축을 통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공정위는 이러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급 취지에 따라 관련단체를 통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하고, 내년 상반기 중에 동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활용실태를 점검할 계획으로 있다.

이번에 제정된 건설자재 및 엔지니어링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◆ 공통 사항 ◆

- ▶ 대금은 목적물(성과품)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으로 정한 기한 내에 지급
 -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어음할인료 추가 지급
- ▶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반품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, 해당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

<부당반품행위>

-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
-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등

- 1) · 건설자재 분야 : 대한건설협회, 대한전문건설협회, 중소기업(협)중앙회, 한국레이콘공업(협)연합회, 한국아스콘공업(협)연합회, 한국시멘트공업(협)연합회
- 엔지니어링 분야 :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
- 2) 11개 분야는 건설, 자동차, 기계, 전기, 전자, 조선, 섬유, 건축설계, 소프트웨어, 건설자재, 엔지니어링, 이중 건설, 건축설계, 섬유 및 기계 분야와 소프트웨어, 전기, 전자, 조선 및 자동차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·개정내용은 각각 공정경쟁제38호('98년 10월) pp.26~27 및 제39호('98년 11월) pp.28~29 참조

<부당감액행위>

- 위탁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
 - 목적물의 완성에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 등을 원사업자 또는 원사업자가 지정한 제3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거나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
- ▶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
 - 1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
 - ▶ 계약기간 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상당한 기간 동안의 최고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원사업자의 계약해제
 -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강화

◆ 건설자재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특이내용 ◆

- ▶ 수급사업자의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부담하는 지체상금의 부담율을 명시(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1,000분의 1)함으로써 분쟁요인을 사전에 제거
 -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물품의 제도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, 천재·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, 기타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상금 부담을 면제

◆ 엔지니어링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특이내용 ◆

- ▶ 원사업자가 부도·파산 등으로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없거나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
- ▶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하도급법에 의하여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설치된 엔지니어링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으로 해결

<관련단체 현황>

구 분	단 체 명	회원사수('98년 10월말)	
<건설자재분야>	· 원사업자	대한건설협회	3,622개사
		대한전문건설협회	21,571개사
	· 수급사업자	중소기업(협)중앙회	65,000개사
		한국레미콘(협)연합회	(504개사)
		한국아스콘(협)연합회	(271개사)
		한국시멘트가공(협)연합회	(881개사)
<엔지니어링분야>	· 원·수급사업자	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	1,120개사